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7. 13 선고 2021나3417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7. 13 선고 2021나34178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5. 27 선고 2019가단5264253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신원

담당변호사 김철구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서

변론종결 2022. 6. 22.

판결선고 2022. 7. 13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5. 27. 선고 2019가단5264253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기재 음식점 영업에 관하여 2017. 11. 1. 체결한 영업양수도계약을 55,223,10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55,223,1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4쪽 아래에서 7번째 줄의 ‘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소’를 ‘이 사건 추심금 등 청구의 소’로 고치고, 제6쪽 11번째 줄부터 제7쪽 아래에서 2번째 줄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「2)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는 늦어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H 등 5개의 국내 대표적인 신용카드 회사들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2018. 10. 12. 무렵에는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,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.

① 원고는 2017. 4.경부터 C와 식자재 공급 거래를 시작하였는데, 그로부터 불과 3개월이 경과한 2017. 7. 20. 시점에 C를 상대로 미납된 식자재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위 소에서 C가 대응하지 않아 변론 없이 이 사건 물품대금 판결이 선고된 뒤 확정되었다.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C는 원고와 거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, 원고 또한 이와 같은 C의 자금 사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.

- ② 원고는 2017. 12. 7. C가 주거래 은행인 E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, 2018. 2. 12. 실제 추심을 하였는데, 추심이 이루어진 금액은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의 액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4,567,855원에 불과하였다.
- ③ 원고는 C가 2017. 11. 1.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. 2. 12.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, 그 당시에 이미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.
- ④ 피고가 C로부터 별지 기재 음식점을 양수하기 몇 개월 전 C가 자금이 없어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, 이에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.
- ⑤ 원고는 별지 기재 음식점을 포함하여 C가 운영하는 13개 음식점에 식자재를 납품하여 왔으므로, 위 음식점들의 소재지와 운영 상태에 대하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. 따라서 만약 별지 기재 음식점을 제외한 다른 음식점들이 C에 의하여 계속 운영 중이었다면, 원고로서는 피고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나 신용카드 결제대금 채권 등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는 것 외에도, C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혹은 신용카드 결제대금 채권 역시 가압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, 원고는 C에 대하여 2018. 2. 12.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로는 집행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.
- ⑥ C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될 무렵 이 사건 음식점 외에 다른 지점들의 운영을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, 2019. 5. 31.에는 폐업하기에 이르렀는바,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C의 경영 상황을 확인하여 왔을 것으로 보이고,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과 이 사건 추심금 등 청구의 소 제기 역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크다.」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수경, 판사 김우현, 판사 이창열

별지